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91
----------	-------

발의연월일 : 2026. 5. 15.

발 의 자 : 정희용 · 고동진 · 김종양  
박준태 · 박충권 · 김용태  
주호영 · 김선교 · 임종득  
최수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하고, 국가보훈부는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규정에 따라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여야 하고,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그 헌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음.

이에 각 국가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고, 유엔참전용사의 손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디지털콘텐츠 교육 자료 개발 사업의 근거를 명시하여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충분히 예우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

가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별표 2 신설 등).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별표의”를 “별표 1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7월 27일을”을 “별표 2에 따른 유엔참전국의 최초 참전일을 각 국가의”로 한다.

제10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엔참전용사의 손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디지털콘텐츠(「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를 이용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교육 자료 개발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유엔참전국 최초 참전일(제5조제1항 관련)

유엔참전국	최초 참전일
미국	6월 27일
영국(아일랜드)	7월 1일
호주	7월 1일
네덜란드	7월 19일
캐나다	7월 28일
프랑스	7월 29일
뉴질랜드	7월 30일
필리핀	9월 19일
튀르키예	10월 17일
태국	11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11월 16일
그리스	12월 1일
벨기에	1월 31일
룩셈부르크	1월 31일
에티오피아	5월 6일
콜롬비아	5월 8일
스웨덴	9월 23일
이탈리아	11월 16일
인도	11월 20일
덴마크	3월 7일
노르웨이	6월 22일
독일	1월 28일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3. “유엔참전국”이란 6·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u>별표의</u> 국가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별표 1의</u>----- -----.</p>
<p>제5조(유엔군 참전의 날 및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①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u>7월 27일</u>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한다.</p> <p>② (생 략)</p>	<p>제5조(유엔군 참전의 날 및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① - ----- ----- ----- -----<u>별표 2에 따른 유엔참전국의 최초 참전일을 각 국가의</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유엔참전국의 정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4. (생 략)</p>	<p>제10조(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신 설>

<신 설>

5. 유엔참전용사의 손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디지털콘텐츠(「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를 이용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교육자료 개발